

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- 한국발명진흥회 업무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(이하 '협약' 이라 한다)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발명진흥회(이하 '양 당사자' 라 한다)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콘텐츠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촉진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,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1.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각 기관 추진 관련 프로그램 상호 홍보
2.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콘텐츠 스타트업의 발굴, 상담 및 지원
3. 콘텐츠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거래 및 사업화 지원
4. 각 기관 보유 네트워크 및 인프라의 연계 활용
5. 협력 프로그램 추진시 온·오프라인 공동 홍보·마케팅 등
6.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

제3조(성신행) 양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양 당사자는 본 협약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입수한 상대방 당사자의 경영상의 정보와 기타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를 포함한 비밀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본 협약의 이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일방의 이의가 없는 한 효력이 유지되며, 필요시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본 협약을 변경·수정할 수 있다.

제6조(기타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 본 협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각 기관의 대표자가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6월 5일

KOCCA
한국콘텐츠진흥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원장 김영준



KIPA
한국발명진흥회

한국발명진흥회
회장 구자열

